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 조세법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1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고발 시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을 관할수사<br>기관으로 변경 ..... | 3 |



## I. 개요

### 1.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16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8. 12.
- (3) 회 부 일 : 2025. 8. 13.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고발 시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을 관할수사기관으로 변경(황운하의원안)

| 현 행                                                                                                                     | 개정안                                                                                                                    |
|-------------------------------------------------------------------------------------------------------------------------|------------------------------------------------------------------------------------------------------------------------|
| <input type="checkbox"/> 압수물건의 인계(제18조)<br>○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 혐의자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을 <u>검사</u> 에게 인계하여야 함 | <input type="checkbox"/> 인계 대상: 검사→관할수사기관<br>○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 혐의자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발한 경우 <u>관할수사기관</u> 에 인계하여야 함 |

\* 황운하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16)

☐ 개정안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을 ‘검사’에서 ‘관할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법<sup>1)</sup>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하면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시 압수물건을 압수목록과 함께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2020년 2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2021. 1. 1. 시행)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한정되었으며,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권<sup>2)</sup>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지니게 되었음.

다만,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sup>3)</sup>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나목<sup>4)</sup>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2)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3)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로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 법률안의 심사상황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2. 경제범죄: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 연<br>번 | 법률안              | 의안<br>번호 | 대표발의자 | 주요내용                                                                                                                                             |
|--------|------------------|----------|-------|--------------------------------------------------------------------------------------------------------------------------------------------------|
| 1      | 공소청법안            | 3354     | 박은정의원 |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                                  |
| 2      | 수사절차법안           | 3348     | 차규근의원 |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규정을 이동시키고, “심야조사 제한”, “압수·수색의 심리” 등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                  |
| 3      | 중대범죄<br>수사청법안    | 3346     | 황운하의원 |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 |
| 4      | 형사소송법<br>일부개정법률안 | 3355     | 차규근의원 |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                             |